성년 후견 제도란?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본인의 판단 능력	지원자	
보조	부족	보조인	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좌	현저히 부족	보좌인	
후견	부족한 것이 통상인 상태	성년 후견인	
임의 후견	본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본인이 미리 체결해 둔 임의 후견 계약에 따라 임의 후견인이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원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사람이나 법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문의처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상담은	각 시구정촌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 장애인의 상담 창구는 시구정촌 및 시구정촌이 위탁한 지정 상담지원 사업자입니다. * 시구정촌에 핵심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창구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구정촌의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의 문의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 https://www.houterasu.or.jp / 0570-078374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7:00 * 일반전화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3 분 8.5 엔(세금 별도)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 IP 전화에서는 '03-6745-5600'으로 전화하십시오.
임의 후견 계약에 대해서는	**일본공증인연합회** TEL 03-3502-8050 https://www.koshonin.gr.jp/ 또는 **전국의 공증사무소**
성년 후견을 신청하기 위한 수속, 필요 서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법원 웹사이트(후견 포털 사이트)** 後見ポータルサイト 검색 https://www.courts.go.jp/saiban/koukenp00/ 성년 후견을 신청하기 위한 수속에 관한 안내 및 정형적인 신청서와 그 기입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リサイクル適性Ⓐ
この印刷物は、印刷用の紙へリサイクルできます。

令和７年10月　最高裁判所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을 위하여

가정법원

수 속 의 흐 름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이
예를 들어...

- 집을 팔고 싶을 때
-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 유산 분할을 하고 싶을 때

혼자서 하기는 불안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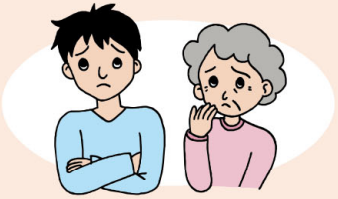

임의 후견 계약

공정증서로
체결합니다.

공증사무소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신청

● **보조/보좌/후견의 개시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것]

- 신청서
- 진단서(성년 후견용)
- 신청 수수료(1 건당 800 엔분의 수입인지)
- 등기 수수료(2,600 엔분의 수입인지)
- 우표
- 본인의 호적등본

등

상세 내용은 가정법원에 준비되어 있는 일람표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 신청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조사 등

★ 법원에서 사정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해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심판

감독

※감독의 흐름

가정 법원

임의 후견 감독인 → 임의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등 → 성년 후견인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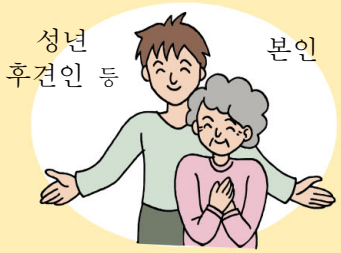

◎ 신변을 배려하면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성년 후견 등기

심판 내용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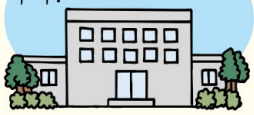
법무국